

참고자료2. 200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자금지원지침

가. 자금지원범위

- 1)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80% 이내로 한다. 다만, 중소기업(비영리법인 포함), ESCO투자사업(성과보증계약에 한함)은 소요자금의 100% 이내,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은 10% 우대(대기업 : 80→90%, 중소기업 : 100%) 한다.
- 2) 시설자금은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·개수공사비, 보수비·설계·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. 다만, 부가가치세,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하며, 보수비는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% 이내로 한다.
- 3)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집단에너지사업 예산으로만 지원한다. 다만,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발생된 잉여열이나 공정발생열을 회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공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4) 운전자금은 전년도에 당해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, 당해 제품의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6개월분의 금액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자금지원조건

1) 시설자금

| 사업명 | |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| 대출기간 | 이자율 | 비고(억원)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|
|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| 자발적협약기업투자사업 | 500억원 이내 (사업장당 250억원 이내) | 3년거치5년 분할상환 | 「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」에 따름 | 1,400 | | |
| |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| 200억원 이내 (동일사업자당) | | | 2,437 | | |
| | 건물효율등급 인증지원사업 | 300억원 이내 (건설허가사업장당 100억원 이내) |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| | 1,350 | | |
| | ESCO 투자사업 | 270억원 이내 (동일사업자당) 다만, 동일투자지당 150억원 이내 | 3년거치 7년분할상환 | | 140 | | |
| | 수요관리 투자사업 | 50억원 이내 | 3년거치5년 분할상환 | | | | |
| |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| 지역냉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 | 없음 | | 8년거치7년 분할상환 | | 500 |
| | |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합 계 | | | | | 5,827 | | |

주 1) 위 표의 대출기간이 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」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주 2) 비고란은 지원규모이며,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.

2) 운전자금 (중소기업에 한함)

| 사업명 | 지원대상 |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| 대출기간 | 이자율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| · 공단이 인증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| 10억원 이내 | 1년거치2년 분할상환 | 「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분할상환 운영요령」에 따름 |
| | · ESCO | | | |
| | · 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이 투자한 창업기업 | | | |

주1)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. 다만,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주2) 운전자금은 해당사업의 시설자금의 지원 금액에 포함하여 운영한다.

다. 자금지원대상자 (자금지원 세부내역은 [별표1]과 같음)

| 사업명 | 자금지원대상자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 | ○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동 협약의 기간이 완료되고 계속 협약에 참여하고자 참여의향서 및 해당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 |
| II.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| ○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에너지절약시설을 신·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(다만, 동 지침 적용년도 기준으로 전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'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'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함) |
| III.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| ○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|
| IV. 수요관리투자사업 | ○ 자금지원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시설을 신·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|
| V. 건물효율등급인증 지원사업 | ○ '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' (지식경제부 고시)에 의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자 |
| VI. ESCO투자사업 | ○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|
| VII.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| ○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 |

※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kemco.or.kr) 참조